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

케어블 커뮤니케어
인천 미추홀점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본 기관의 입소 정원은 주야간보호 36명이다
- 나. 서비스 수급자(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롱텀케어)를 통한 기관홍보
 -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 3) 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 4)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 6) 당 기관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2. 이용대상자

- 가.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재가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 나. 인지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여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본인부담금
 -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계약의 해제 :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3) 병원진료 :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이용자는 시설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이용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 4) 이용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 5) 이용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 6)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2026.01.01.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나. 등급별 주야간보호 1일당 수가 (2026.01.01.기준)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 <본인부담금 15%기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41,820 원	56,060 원	69,730 원	76,820 원	82,370 원
2등급	38,720 원	51,930 원	64,590 원	71,160 원	76,310 원
3등급	35,740 원	47,940 원	59,640 원	65,750 원	70,500 원
4등급	34,120 원	46,300 원	58,010 원	64,090 원	68,860 원
5등급	32,490 원	44,650 원	56,360 원	62,460 원	67,240 원
인지지원등급	32,490 원	44,650 원	56,360 원	56,360 원	56,360 원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라.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점심과 저녁으로 구성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마.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순번	항목	서비스내용	단가	비용(20일)	비고
1	식재료비	1일 2식	3,850원	154,000원	3,850원x2식x20일
2	간식비	1일 2회	1,500원	30,000원	184,000원(1일 2식 20일 기준 식비)